

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

(이효원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74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이효원, 강석주, 고광민,
김경훈, 김규남, 김영철,
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
김지향, 김태수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
윤종복, 이성배, 이은림,
이종환, 임춘대, 전병주,
최민규, 허 훈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25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개대상을 규정함(제2조)
- 나. 공개방법을 규정함(제3조)
- 다.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(제4조)
- 라. 예산낭비 등 심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(제5조)
- 마. 성과금 지급 및 포상을 규정함(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, 지방재정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개대상)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예산(기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
2.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
3.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
4.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3조(공개방법)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이름·직위·주소·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.

제4조(신고센터 설치·운영) ① 교육감은 예산·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,

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 요구,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·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(이하 “신고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신고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교육감은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교육감은 신고센터에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(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)에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(이하 “제안자 등”이라 한다)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교육감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예산낭비 등 심사) ① 교육감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심사는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행한다.

제6조(성과금 지급 및 포상) ① 교육감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

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」 및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하는 것으로,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(예산운영팀)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어,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